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03,259,989	33,097,800
일반회계	851,793,954	25,553,819
특별회계	251,466,035	7,543,981
공기업특별회계	73,272,576	2,198,17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380,917	1,061,42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891,659	1,136,750
기타특별회계	178,193,459	5,345,804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6,657,185	1,099,71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856,109	145,68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76,109	44,283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53	92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109,193,655	3,275,810
주택사업특별회계	2,443,806	73,3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79,714	35,391
기반시설특별회계	1,206,752	36,203
경영사업특별회계	961,757	28,853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2,836,156	385,085
주차장특별회계	7,379,163	221,375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 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성"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00,23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0,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